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6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식품인재개발원

제21조제4항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호 중 “검역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검역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중 “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본부장이 실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로,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 중 “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 중 “검역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후단 중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를 “적정하게 보호·관리되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양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 후단 중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를 “적정하게 보호·관리되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양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 중 “검역본부장”을 각각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나목 단서 중 “검역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2) 단서 및 같은 호 다목1)나) 단서 중 “검역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4 비고 제3호 중 “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5 비고 제1호 전단 중 “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6 비고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하기 전에 구매자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양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4 제3호가목3) 중 “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4서식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인증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증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6서식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7서식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8서식 중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장”을 “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9서식 뒤쪽 중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으로 하고, 같은 뒤쪽 중 “장직”을 “관직”으로 한다.

부 칙

제1호(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마목 후단의 개정규정, 별표 7 제2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 및 별표 12 제1호 버목의 신설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등록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맹견의 관리) ①·② (생략)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준수사 항을 말한다. 1. ~ 3. (생략) <u>4. 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 생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 설 등을 설치할 것</u> ④ (생략)	제12조의5(맹견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2조의6(맹견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① (생략)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로 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하는 기관·법인·단체가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 시한다.	제12조의6(맹견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농식품공무원교육원</u>	4. <u>농식품인재개발원</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21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를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u>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 역본부장”이라 한다)</u> 에게 통지 해야 한다.	④ ----- ----- -----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 ----- -----.
제29조(전임수의사의 교육) 영 제 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수 의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하며, 6시간 이 상 실시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교 육시간은 <u>검역본부장</u>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전임수의사의 교육) ----- ----- ----- ----- ----- ----- -----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u>검역본부 장</u>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4. ----- ----- <u>농림축산 식품부장관</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u>검역본부장이</u>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업무	6. -----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 -----
③ <u>검역본부장은</u> 법 제60조제3 항에 따라 인증심사업무를 수행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 내용	2.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u>검역본부장이</u>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 <u>농림축산식품부장 관</u>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 정,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 육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u>검 역본부장이</u> 정하여 고시한다.	④ ----- ----- ----- ----- ----- ----- <u>농 림축산식품부장관</u> -----.
제36조의8(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 ① 법 제63조제1항제1 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운송차량”이란 <u>검 역본부장이</u> 별표 9의6에 따른	제36조의8(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 ① ----- ----- ----- <u>농 림축산식품부장관</u> -----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한 운 송차량을 말한다.	----- -----.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도축장”이란 <u>검역본부장</u> 이 별표 9의6에 따른 기준을 충 족하였다고 인정 한 도축장을 말 한다.	② ----- ----- ----- <u>농림축산식품 부장관</u>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6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기준

- 가. 농업인이 해당 농장의 관리를 직접 할 것
- 나. 농업인이 해당 농장의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의 복지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둘 것
- 다. 가목의 농업인 또는 나목의 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관하거나 지정·고시한 교육전문기관에서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4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시설기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후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외에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의 표시를 추가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갖추는 것

3. 사육 및 관리기준

-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 사육방법만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였을 것
- 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되지 않은 일반 농장에서 사육되어 들어온 동물이 없을 것. 다만, 동물의 특성, 사육기간, 사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을 들어온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였을 것
- 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질병이 없는 동물에 투여(사료나 마시는 물에 섞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지 않았을 것
- 마.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서 검출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가축의 종류별 인증기준

가. 소

모든 소는 무리사육(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할 것.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계류(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가능하다.

나. 돼지

- 1) 모든 돼지는 무리사육을 할 것. 다만, 새끼를 밴 돼지의 안전과 유산 방지를 위하여 교미 또는 인공수정 후부터 4주까지는 스톨(돼지를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틀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사육할 수 있다.
- 2) 돼지의 꼬리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훼손하지 말 것. 다만, 꼬리 물기 등 공격행위로 다른 돼지에 상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

다. 닭

1) 산란계

- 가) 모든 닭은 무리사육을 할 것. 다만, 백신접종 등 수의학적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폐쇄형 케이지(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등에서 사육할 수 있다.
- 나) 닭의 부리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훼손하지 말 것. 다만, 닭의 부리 등으로 다른 닭에 상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

2) 육계

- 가) 모든 닭은 무리사육을 할 것. 다만, 백신접종 등 수의학적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사육할 수 있다.
- 나) 계사 내 모든 바닥은 전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하며, 닭의 일상생활을 위해 충분한 깊이가 유지되도록 할 것

라. 오리

- 1) 오리가 고유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물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급수 공간을 제공할 것
- 2) 모든 오리 축사 내 바닥은 견고해야 하며, 전부 깔짚으로 덮여 있을 것. 다

만, 급수시설 및 그 주변 공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마. 염소

모든 염소는 무리사육을 할 것.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계류는 가능하다.

비고

1.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한다.
2. 이 별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4]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1항 관련)

1. 표시 방법

다음의 도형을 간판의 형태로 설치하여 표시한다.



2. 표시 기준: 제1호에 따른 도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1. 간판의 크기: 가로 60cm, 세로 40cm
2. 농장명, 인증번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심벌 및 농림축산식품부 심벌의 크기와 색상
 - 가. 농장명: 세로 10cm, 청색
 - 나. 인증번호 제 호: 세로 5cm(청색)
 - 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cm(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 모양은 녹색, 울타리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동물복지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 라.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세로 10cm, 검정색
 - 라. 심벌의 받침 반 타원: 회색
3. 바탕색: 흰색

비고

1.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때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때 별표 9의2 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5]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2항 관련)

1. 표시 방법

가. 다음의 도형을 동물복지축산물의 포장지에 표시한다.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

나.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가축의 종류, 농장 소재지(이하 이 표에서 “인증농장정보”라 한다)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1) 여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한 경우로서 축산물가공품포장지 협소 등으로 인하여 전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농장 중 일부 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고 나머지 농장의 인증농장정보에 대해서는 포장지의 다른 표시면 또는 홈페이지, QR코드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QR코드 등 포장지 이외의 방법을 통해 나머지 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제공하려면 포장지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개수 및 인증농장정보 확인 방법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2) 여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축산물을 원료로 혼합 또는 분쇄하여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으로서 원료 유래 농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지에 인증농장정보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해당제품에 사용한 인증농장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단위(로트) 별로 기록·유지해야 한다.

2. 표시 기준

제1호가목에 따른 도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라.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마. 표시 도형의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바.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사.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동물복지”, “(ANIMAL WELFARE)”, “ANIMAL WELFARE”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같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아.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C20+K100으로 한다.

자.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차.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카.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타. 표시 도형과 함께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 글자는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물, 동물복지축산물,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사육 ○○으로 표시한다.

비고

1.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때 별표 9의2 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인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해당 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

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2. 질병 치료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동물은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난 후에 해당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 이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6]

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동물복지 도축장의 기준(제36조의8 관련)

1. 동물복지 운송차량
-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차량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나. 동물이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다. 운송차량 및 적재함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을 것
- 라.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일 것
- 마.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는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바. 적재함 바닥은 동물의 분변이나 기타 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동물복지 도축장
- 가. 동물학대 여부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것
- 나.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점검·기록하는 동물복지 담당자를 지정할 것
- 다. 소·돼지의 경우에는 하차시 동물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아픈 동물, 공격성 동물 등을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라. 계류장은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형 구조일 것
- 마. 계류장에는 동물의 체온조절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 1) 소·돼지 계류장: 분무·샤워장비
- 2) 닭 계류장: 분무·송풍장비
- 바. 계류장에는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비고: 이 별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동물복지 도축장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면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래 신청인 란에 여러 명을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동물 관리장소(주소) ※ 신청인의 주소와 동물을 실제 사육·관리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 작성합니다.

동물 관리자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동물을 실제로 사육·관리하는 사람 정보를 작성합니다.

성명

직위

전화번호

영업 정보
(신청인이 반려동물
영업자인 경우)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허가번호/영업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

성별

중성화

특수목적

출생일

암

수

여

부

여

부

특이사항

특수목적 '여'인 경우 체크 : [] 국가방사동물, [] 장애인보조견, [] 수렵, [] 경비, [] 기타()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년) 보고서

「동물보호법」 제5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23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유의사항

- 24 -

인증번호 제 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농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호	
	(생년월일)	
소재지		
인증구분	가축의 종류	
	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 / 부
농장소재지		
사육시설	동 m ²	
사육규모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동물보호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7항 또는 「동물보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1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복지축산농장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증기관

직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농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가축의 종류		
	인증 대상	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	
	농장소재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번호	
	사육시설	사육규모	
	동 m ²		

「동물보호법」 제5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갱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인증기관

첨부서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1부	수수료
		제56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담당 직원	1. 신청인이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증	
확인사항	2. 신청인이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증	

[동의]	
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동물보호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홍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의 사본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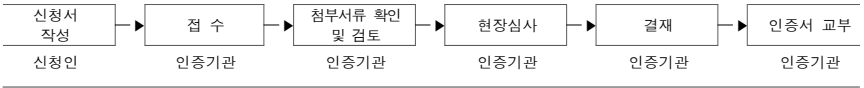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유의사항

-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재심사 신청서
[] 인증갱신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농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심사 신청항목(가축의 종류)	
	재심사 신청사유	

「동물보호법」 제5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증기관 귀하

첨부자료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제56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	-------------------	----------------

작성방법

1.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사 신청항목은 인증기관에서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사항 중 재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적습니다.

지정번호: 제 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인증업무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앞쪽)

제 호

인증심사원증

사 진

3.5cm×4.5cm

(모자 안 쓴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명

55mm×85mm(PET-G카드, 연녹색)

(뒤쪽)

인증심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60조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9에 따
라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임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인}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심사, 인증 갱신 심사 및 재심사
2. 법 제66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3. 심사 및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 및
자료 제출 요구

- 29 -